

이준호 가족간첩 사건

【결정사안】

이준호와 그의 모(母) 배병희가 1985. 7. 23. 서울지방법원에서 1972년 간첩을 방조하였으며, 이준호가 1974년 해병대대 본부의 국가기밀 등을 탐지하고, 1981년 예비군 훈련장의 기밀을 탐지하였다는 혐의로 이준호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배병희는 징역 3년 6월에 자격정지 4년형을 각각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한 사례

【결정요지】

1. 이 사건은 전향(轉餉)한 공작원의 막연한 제보(提報)만을 근거로 서울시경 대공분실에서 수사 초기부터 수사관 관여 하에 참고인들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허위(虛僞) 사실을 작성하도록 강요하였으며, 수사기록에 구금일자 등을 허위로 기재하고,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이 구타, 잠 안재우기 등의 가혹행위를 자행하여 자백을 강요하고, 자백하면 석방될 수 있다는 등으로 기망(欺罔)하여 사건을 허위조작(造作)한 것으로 밝혀졌다.
2. 피해자들이 1985. 1. 11.경 서울시경 대공분실(對共分室)에 불법연행되어 2. 19. 구속영장이 발부되기까지 39일 동안 불법감금되어 조사받았다. 위 불법감금은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2조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3. 피해자들은 고립된 장소에서 장기간 불법감금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강요, 기망 등에 의해 자백을 하였고, 이것이 검찰에까지 이어져 허위진술을 하게 되었다.

4. 1972. 3. 간첩을 방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준호, 배병희의, 1974년 및 1981년 국가기밀을 탐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준호의 각 경찰과 검찰에 서의 자백 외에 아무런 보강증거(補強證據)가 없다.
5. 자백 외에 증거가 없는 사건에 대해 검찰은 경찰의 수사결과를 그대로 받아 들여 기소하였고, 법원은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로 조작된 것이라는 호소를 무시하고 유죄판결을 하였다.
6. 이 사건은 북한에 월북 가족을 두고 있는 사회적 약자가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허위자백을 하고, 자백을 기재한 검찰조서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을 하고 나서도 간첩으로 낙인찍혀 고통을 당한 전형(典刑)적인 간첩조작사건으로 평가된다.
7. 따라서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자백에 의존한 무리한 기소 및 증거재판주의 위반 등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위법한 판결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再審)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 문】

【사 건】 바-3507 이준호·배병희 간첩조작 의혹사건

【신청인】 이준호, 배병희

【결정일】 2006. 12. 19.

【주 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 기재와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음을 결정한다.

【이 유】

I. 사건 개요

1. 신청요지

이준호·배병희(이준호의 어머니)는 1985. 1. 11. 서울시경 옥인동 대공분실에 연행되어 39일간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간첩방조, 간첩, 금품수수 및 회합, 군사기밀 탐지 혐의가 조작되어 기소되었고, 1985. 7. 23. 서울지방법원에서 이준호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배병희는 징역 3년 6월에 자격정지 4년형을 각각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1985. 12. 18. 기각되었으며,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86. 3. 25.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

2. 판결요지

이준호는 1972. 3. 중순경, 6·25 때 월북하였다가 집으로 찾아온 숙부 이한수

로부터 지령을 받고, 뒷산 쪽으로 내보내줌으로써 간첩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배병희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이한수 등을 뒷산 쪽으로 나가도록 하여 안전하게 입북하도록 함으로써 간첩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이준호는 ① 위 일시, 장소에서 이한수로부터 받은 지령에 따라 1974. 4.경 해병대대본부의 위치, 시설 등을 탐지하고, ② 1974. 8.경 이한수를 만나 조선노동당에 가입하여 반국가단체를 구성하여 그 구성원으로서(위 해병대 탐지기밀 보고 및 지령, 공작금을 수수하고) 1979. 10. 초순경 대우자동차에 입사하여 대우중공업 인천공장의 위치, 공장규모, 생산장비 등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③ 1981. 4. 초순경 2일간 예비군 훈련 때 그 훈련장의 위치, 시설 등 국가기밀을 탐지하였다는 것이다.

신청인 이준호는 2006. 5. 17. 이 사건에 대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II. 의혹사항

1. 불법감금 여부

이준호, 배병희는 1985. 1. 11.경 강제연행된 후, 1985. 2. 19.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39일 동안 서울시경 옥인동 대공분실에 불법구금되어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진술 여부

이준호는 옥인동 대공분실에서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들로부터 각목 등을 이

용한 구타와 손과 발을 이용한 구타, 잠 안재우기 등의 고문피해를 입었으며, 고문에 의해 수사기관에서 허위자백하였다는 것이다.

3. 간첩방조 및 간첩행위 여부

이준호와 배병희는 간첩방조 행위로 처벌받은 것은 허위조작된 것이며, 이준호는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하지도 않았으므로 간첩행위로 처벌받은 것은 허위조작된 것이라는 것이다.

Ⅲ. 진실규명조사의 근거와 목적

진실화해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기본법)에 의해 설치되었다.

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는 진실규명 범위 중의 하나로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현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기본법이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대상 중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저질러진 중대한 인권침해는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인 생명권침해, 불법체포·감금, 고문·가혹행위, 허위조작사건 등을 말한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기본법 제2조제2항은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는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 바, 피해자들이 장기간의 불법감금 상태에서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을 하여 허위 조작된 의혹사건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만큼 기본법 제2조제1항제7호가 정한 진실규명의 범위에 해당한다. 또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2조가 정하고 있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은 진실규명 대상에 속한다.

따라서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피해자 이준호·배병희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규명하고, 기본법 제4장이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로 하여금 피해자의 피해사실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 국민통합을 위한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진실화해위원회는 사전조사를 거쳐 2006. 9. 5. 조사개시 의결을 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IV. 진실규명 조사방법과 경과

1. 자료 조사

이 사건 자료조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검찰청 보유자료 : 7건, 1,316쪽

수사기록, 1심·항소심·상고심 및 재심 공판기록 등을 입수하였고, 수사 기록을 통해 사건의 인지, 검거경위, 검거일자, 수사내용, 사건개요 등을

파악하였고, 재판기록을 통해 법정에서의 진술, 증거자료 등을 파악하였다

○ 타 기관 보존자료 : 6건, 92쪽

국가기록원, 법무부 국가보안유공자심의회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 육군, 국가정보원, 용인대학교에서 자료를 입수 분석하였고, ‘정보사범신병조정’ 문서를 통해 검거일시, 범죄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 기타 일반자료 : 3건, 22쪽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노동일보 기사를 입수하였고, 동아일보, 경향신문 기사를 입수하여 분석하였다.

2. 진술 청취

피해자 및 참고인, 당시 수사관 등의 진술청취를 통해 사건의 배경, 수사경위, 전반적인 사건내용을 확인하였다. 참고인 명단, 조사일자 등은 <별표 1> 및 <별표 2> 와 같다.

V. 조사결과

1. 사건진행 경과

가. 피해자 이준호의 가정환경

이준호의 조부 이봉준, 조모 김애지는 장남 이한국, 차남 이한수, 삼남 이한순 세 아들을 두고, 장남 이한국은 배병희와 결혼하여 아들 이준호와 딸 이주영을 두었는데,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강화도에서 인민학교 교사 활동을 하다가

1950. 9. 28. 서울이 국군에 탈환되었을 때 그의 동생 이한수와 함께 월북하였다.

이준호는 강화도 양도면 건평리에서 조부 이봉준, 조모 김애지, 모 배병희, 숙부 이한순, 숙모 이명금, 매 이주영과 함께 생활하였으며, 1969. 3. 서라벌예술대학 연극영화과에 입학, 1973. 2. 동 대학을 졸업한 뒤, 1973. 10. 5. 방위병에 소집되어 이듬해 1974. 5. 17. 의가사제대를 하였다.

이준호를 비롯한 가족은 1974년 겨울 인천으로 이사를 하였으며, 이준호는 이후 전자제품상 등 자영업에 종사하다가 1979. 10. 초순경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85. 1. 11.경 이 사건으로 연행될 때까지 계속 근무하였다.¹⁾

나. 수사 착수

1) 전 공작원 홍OO의 제보

1985. 2.에 작성된 ‘서울시경의 검거보고서’에 의하면,²⁾ 서울시경 옥인동 대공분실은 前 대남공작원 홍OO³⁾로부터 북한에 있을 때 “공작원 박모로부터 1972년 강화도 집에 내려가 가족과 접촉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첩보 및 안모 지도원과 공작원 운반을 담당하는 운전수로부터 “이한수가 1974년에 2차 납파되어 가족토대공작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말을 들었다”는 첩보를 입수하였다.

이후 대공분실 수사팀은 경기도 해안과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위 홍OO에게 들었던 내용을 토대로 가족구성이 가장 유사한 대상 수십 명을 색출하여 집중 수사를 실시, 경기도 강화군 양도면 건평리 542에 거주하다 한국전쟁 당시 월북한 이준호의 숙부 이한수를 납파공작원으로 지목한 다음, 홍OO에게 이한수

1) 서울시경 수사기록 중 ‘의견서(1985. 2.)’에 기재된 이준호 가족의 이력사항

2) ‘경찰수사기록’ 중 72쪽(1985. 2. 작성)

3) 홍OO는 북한 대남공작원으로 1980. 5. 16. 납파되었다가, 같은 달 23. 수사기관에 검거된 후 조사받는 과정에서 전향하여 1982. 8. 25.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

의 초등학교 사진을 제시하여 사진 속 인물이 북한에 있을 때 만난 박모와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그의 친척인 이준호, 배병희를 상대로 조사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홍OO는 2006. 9. 27.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재북 당시 박모의 본명은 알지 못하였고, 남한의 수사기관에서 박모가 이한수임을 알려주어 비로소 알게 되었다. 또한 박모의 출신지 역시 경기도일 것이라고 추정만 하였을 뿐 정확한 지역은 알지 못하였으나 이것 역시 남한의 수사기관에서 알려주어 강화도라고 뒤늦게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가족들과의 접촉상황에 대해서 “1972년 당시 가족들은 박모의 출현에 매우 놀라는 눈치였으며, 특히 아버지는 박모의 공작에 대해 반대하였다는 것과 조카는 이불 속에 누워 있었다는 말을 들었고, 박모가 갈증을 느껴 형수에게 물을 떠달라고 하였으나 함께 갔던 성명불상 조장이 박모의 가족을 믿지 못해 밖에 나가지 못하게 제지하는 등 매우 긴장된 분위기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공작에서 대학에 재학중인 조카 이준호에게 학비에 사용하라며 공작금을 전해주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으며,

1974년 박모가 재남파되어 복귀하였다는 사실을 안모 지도원과 운전기사 성명불상자로부터 득문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안모 지도원과 가깝게 지내기는 하였으나 이한수의 재남파 공작 이야기를 들은 기억은 전혀 나지 않는다”,

“경찰에서 자신이 제보한 사건이 생길 때마다 수사관들이 진술서 초안을 작성하여 자신에게 가져와 초안대로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한 적이 몇 차례 있었다고 하며, 이준호 사건을 수사할 당시에도 역시 일정하게 수사가 진행된 뒤 본인에게 경찰이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내용을 적은 종이를 가져와 그 내용을 진술서에 담아줄 것을 요구하여 그대로 작성하여 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공작대상 가족이 저항하는 경우 다시 가족토대공작을 전개를 하는지 여부를 묻자, “그 경우 통상 재공작을 전개하지 않으며, 그러한 공작은 보통 포기한다”고 진술하였다.

2) 담당 수사관의 진술

김OO는 “1982년경 전 남파간첩 홍OO로부터 입수된 제보로 시작되어 약 3년간 수사했던 것으로 기억”하며, 첩보입수 때부터 주무 수사도 자신이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⁴⁾

조OO는 “이준호에 대한 수사 착수는 전 남파간첩 홍OO의 첩보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위 김OO가 일정하게 수사가 진행된 후 홍OO에게 몇 가지 사건 내용의 요점을 적어주어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⁵⁾

서무 업무를 담당하였던 김OO은 “이준호·배병희에 대한 수사는 홍OO의 첩보에 의해 시작되었다”, “수사가 일정하게 진행된 후 몇 가지 사건내용을 진술하도록 홍OO와 상의하였을 것”⁶⁾이라고 진술하였다.

3) 소 결

이 사건은 서울시경에서 전 대남공작원이었던 홍OO가 북한에서 박모 공작원이 남파되어 경기지역의 가족을 만난 사실을 들었다고 제보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

사건을 수사할 당시에 경찰은 일정하게 수사를 진행한 뒤 홍OO에게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 사실을 적은 종이를 가져와 그 내용을 진술서에 담아줄 것을 요구하는 등 최초의 막연한 제보를 바탕으로

4) 2006. 10. 27. 진술청취

5) 2006. 10. 23. 진술청취

6) 2006. 10. 24. 진술청취

수사과정에서 짜맞추기 식으로 조작하여,

이한수가 1972년 잠깐 동안 가족을 만나고 간 사실을 ‘간첩방조’로 조작하고, 1974년의 간첩행위는 완전히 허위의 사실을 조작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수사과정

서울시경 옥인동 대공분실에서 1985. 1. 11.경 이준호, 배병호를 연행하여 불법구금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다가 2. 17.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2. 19.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수사를 마무리한 다음 2. 27.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1달여 조사를 한 다음 3. 26. 서울지방법원에 기소(검사 고영주)를 하였다.

라. 재판 결과

서울형사지방법원(재판장 부장판사 안문태, 판사 이동영, 권순일)은 1985. 4. 23. 첫 재판을 시작으로 모두 5회 재판을 거쳐 7. 23. 이준호에게 징역 10년, 배병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재판장 부장판사 이원배, 판사 곽동효, 박장우)은 1985. 12. 18. 이준호에게 징역 7년 배병희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다.

대법원(대법원 판사 김형시,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은 1986. 3. 25.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하였고, 이준호, 배병희는 복역을 마치고 1992. 4. 30. 및 1988. 10. 31. 각각 만기출소하였다.

2. 불법감금 여부

가. 수사 기록

서울시경 검거보고서에 의하면 1985. 2. 17. 11:00 이준호, 배병희, 김애지, 이

명금을 인천의 주거지에서 검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준호와 배병희에 대하여는 1985. 2. 17. 구속영장을 청구, 2. 19.에 발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⁷⁾

서울시경에서 국가안전기획부로 보낸 신병처리조정문서에 의하면 서울시경 대공과 대공분실에서 이준호, 배병희를 검거한 일자는 1985. 2. 10.이며, 이들을 검거한 장소는 각각 피의자들의 주거지로 기재하고 있고,⁸⁾ 이와 관련하여 국가안전기획부는 1985. 2. 18.자 정보사범 신병처리조정문서에서 서울시경의 의견대로 신병처리하도록 통지하고 있다.⁹⁾

나. 피해자 진술

이준호는 1985. 12. 4.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1985. 1. 10. 밤 10시에 연행되어 1985. 2. 19.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배병희는 “이준호보다 약간 먼저 연행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수사기관에 구금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준호는 1985. 9. 23. 작성한 항소이유서에서 “경찰에서의 48일간 감금 취조로부터 억압과 고문 등 고통스러움에 의한 본 피고인의 거짓 진술이었다”고 주장하였고,¹⁰⁾

1986. 2. 18. 작성한 상고이유서에서 “1985. 1. 11. 서울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되었으며, 48일간 감금시켜 가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주장하였다.¹¹⁾

이준호는 “1985. 1. 11. 대우자동차 중부사무소에서 근무 중 집에서 어머니가

7) 「수사기록」 제73쪽 (서울시경 1985. 2. 작성)

8) 1985. 2. 13. 치안본부에서 작성한 『대공02661-1676 정보사범신병처리조정』 제하 문건

9) 1985. 2. 18. 『대공703-147, 정보사범 신병처리 조정』 제하 문건

10) 서울중앙지검 기록 중 ‘서울형사지방법원’ 기록 306쪽

11) 서울중앙지검 기록 중 ‘서울형사지방법원’ 기록 상고이유서

연행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인천 집으로 간 후, 서울역 역전 파출소로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처 김기숙, 매형 백남해, 매 이주형과 같이 서울역 파출소로 가자, 차에 태워져 연행되었다”고 진술하였다.¹²⁾

다. 참고인 진술

이준호의 처인 김기숙은 “1985. 1. 11. 집에 같이 있다가 배병희가 연행되어, 남편인 이준호에게 연락을 하였고 이준호가 집에 왔을 때,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같이 서울역 파출소로 갔으며, 그 당시의 상황을 가게부에 기록하여 날짜를 정확히 기억한다고 진술하면서, 숙부 이한순과 숙모 이명금이 연행되었던 사실 역시 가게부에 기재하여 연행일자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¹³⁾

이준호의 숙모 이명금은 1985. 5. 17. 1심 공판정에서 자신도 1985. 1. 14.부터 1. 28.까지 수사기관에서 감금된 상태에서 14일간 조사를 받았다고 증언하였고,¹⁴⁾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남편 이한순과 함께 1985. 1.경 3명의 수사관에 의해 영장도 없이 가택수사와 임의동행을 요구받아 응하였으며, 이 당시 구금된 일수는 14일이다”라고 진술하였다.¹⁵⁾

이준호의 숙부 이한순은 “이준호와 배병희가 연행되고 며칠 뒤인 1985. 1. 14.경 인천 자택에서 수사관 3명에 의해 처와 함께 영장 없이 연행되어 각기 다른 방에서 약 2주일간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¹⁶⁾

라. 수사관 진술

김OO는 서울시경 대공과 대공분실이 1985. 2. 13.에 작성하여 국가안전기획

12) 2006. 6. 3. 진술청취

13) 2006. 7. 21. 및 2006. 10. 4. 진술청취

14) 서울중앙지검 기록 중 ‘서울형사지방법원 1심공판’ (1985. 5. 14. 85고합284)

15) 2006. 7. 21. 진술청취

16) 2006. 7. 28. 진술청취

부로 보낸 ‘정보사범발생 및 검거통보’에서 이준호 가족의 검거일자와 검찰송치 기록 중 의견서에 기록된 검거보고서의 검거일자가 허위로 기재된 것에 대해, “그렇게 기재된 것은 잘못”이라고 하면서 “이준호 연행과정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나, 임의동행 형식으로 1985. 1. 11.경 이준호, 배병희 등을 연행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¹⁷⁾

조OO는 “이준호를 연행하였던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나, 이준호가 수십 일간 옥인동 분실에서 조사를 받은 뒤 검찰로 송치되었던 점은 기억하고 있다. 이준호 연행경위에 대해 기억나는 사실은 서울역 파출소로 출두한 이준호를 연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영장제시 등의 절차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¹⁸⁾

서무담당 김OO은 ‘신병처리조정의견서’와 송치 의견서에 기록된 이준호의 검거일자가 각각 ‘2. 10.’과 ‘2. 17.’로 상이하게 기재된 것은 “잘못된 점”이라고 진술하였고, 직접 이준호를 연행한 사실은 없으나 “이준호가 옥인동 대공분실에서 약 한 달 정도 조사받았고, 이준호 등을 연행할 당시 영장 등은 발부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¹⁹⁾

심OO은 “배병희를 연행한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나, 상당기간 옥인동 분실에서 영장 없이 구금되어 있었다. 당시 피의자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리고 와 장기간 불법구금하는 것은 수사관행이었다”고 진술하였다.²⁰⁾

마. 소 결

수사기록에 기재된 이준호, 배병희, 이명금, 이한순의 서울시경 진술서 말미에 기록된 날짜는 원래 ‘1’월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나중에 ‘2’월로 고쳐진 흔적이 있다.

17) 2006. 10. 27. 진술청취

18) 2006. 10. 23. 진술청취

19) 2006. 10. 24. 진술청취

20) 2006. 10. 26. 진술청취

서울시경에서 국가안전기획부로 보낸 신병처리조정문서에는 이준호, 배병희, 김애지, 이명금의 검거일이 1985. 2. 10.로 기재된 반면, 서울시경의 검거보고서는 1985. 2. 17.로 기재되어 있는 바, 검거 당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것도 이례적이고, 위 수사관들이 모두 검거일자가 잘못 기재된 것이며, 장기간 불법 구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준호·배병희는 1985. 1. 11.경 서울시경 옥인동 대공분실로 영장 없이 연행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준호의 처 김기숙, 이준호의 숙부 이한순의 진술도 이와 부합한다.

따라서 이준호, 배병희가 1985. 1. 11.경 불법연행되어 2. 19. 구속영장이 발부되기까지 39일 동안 불법감금되어 조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적어도 위 신병처리조정문서에 의하면 이준호, 배병희를 검거한 일자는 1985. 2. 10.이므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2. 19.까지 9일간은 불법감금에 해당한다.

위 불법감금은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나, 시효가 지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으나 불법감금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422조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3. 가혹행위 및 허위진술 강요 여부

가. 피해자 진술

이준호는 1985. 4. 23. 서울형사지방법원 1심 공판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허위 사실을 자백한 이유에 대해, 고문당한 일이 있고 ‘집으로 빨리 돌아가야 할 것이 아니라, 시킨대로 하면 내보내준다’고 해서 진술한 것이며,

검찰에서 허위자백을 한 이유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검찰에 가서 부인하여도 소용없으니 여기서 말한 대로 이야기하라’고 하였으며, 이미 ‘검찰보

다 상급 기관인 안기부에서 결재가 난 일이니 여기서와 다르게 이야기해도 소용없다'고 말해 허위진술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²¹⁾

1985. 10. 30.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공판정에서, 39일간 수사기관에서 구금되어 조사받는 동안 구타를 당하였고, 발로 밟히고, 손으로 옆구리를 맞기도 하는 등 물리적 압력과, 자백을 해야 어머니와 나갈 수 있다고 회유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자백을 하였으며, 검찰에서는 물리적 압력을 받은 사실은 없으나 수사관이 검찰에서도 수사기관에서와 같이 자백하여야 공소가 취소되고 어머니와 함께 나갈 수 있으며 수사관들과 함께 공작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허위 사실을 시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준호는 “경찰수사관이 조서를 작성하는 동안 손과 발 등으로 매일 구타하였고, 수사관들이 요구하는 대로 조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틀’을 가져오라는 등의 협박을 당한 사실이 있다.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쳐서 넘어지면 뒤에서 다른 수사관이 목이나 허리, 등을 짓밟고, 잠을 안 재우고 의자에서 자게 하고, 강한 서치라이트 같은 것을 약 3일간 비추었다”, “74년 2차 접촉사실을 조작할 때에는 잠을 전혀 자지 못하게 한 채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잠을 못 잔 상태에서 정신이 몽롱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²²⁾

이준호 수용자신분장의 1985. 4. 11. 및 4. 22.자 접견기록에는 수사과정에서 강제로 쏘인 불빛의 후유장애인 눈의 통증을 호소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배병희는 1985. 4. 23. 1심 공판시 경찰과 검찰에서 행하지 않은 범행사실을 진술한 이유에 대해, ‘수사기관이 시키는 대로 하면 내보내준다’고 했다고 주장했고, 1985. 12. 18. 서울고등법원 공판에서도 ‘검사 앞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자백한 것은 아들이 이미 자백을 했고 아들의 말과 같이 진술해야 나갈 수 있다고 해서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1) 서울중앙지검 기록 중 ‘서울형사지방법원 1회 공판조서’ 104쪽

22) 2006. 6. 30. 진술청취

나. 참고인 진술

위 이한순은 “수사 첫날 벽에 물구나무서기를 시작으로, 수사관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수사실에 있던 수사관들이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발로 가슴을 가격하는 등의 폭행을 수시로 당했으며, 수사 기간 내내 잠을 자지 못하도록 강한 불빛을 얼굴에 자주 비추어 눈이 매우 고통스러웠다”, “서울시경 대공분실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6·25 당시 월북한 형 이한수를 만나기 위해 입북한 사실이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조서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며 물구나무세우기, 불빛을 비추어 잠 안재우기, 구타, 물고문 등을 당했다”,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 말미의 작성 날짜 ‘2. 18.’의 글씨체는 자신의 글씨체가 아닌 수사관의 글씨체”라고 진술하였다.²³⁾

위 이명금은 1985. 5. 14. 1심 공판시 경찰이나 검찰에서 진술한 것과 다른 진술을 한 이유에 대해, “경찰에서 처음에는 사실대로 작성하였지만 수사관이 이준호는 사실대로 말하는데 왜 너는 이렇게 말하느냐,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 맞지 않느냐 다시 써라 해서 여러 번 그렇게 하다 보니 다른 진술이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수사관 진술

조OO는 이준호를 수사할 당시 큰소리를 지른 사실은 있으나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준호 연행과정에서 구타한 사실, 수사실에서 약 이틀간 잠을 재우지 않고 조사하였던 사실 등은 시인하였고,²⁴⁾

또한, 자신이 직접 참고인 진술서를 받은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는 바가 없으나, 참고인들 중에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면 참고인들의 주장이 사실일 것이라고 진

23) 2006. 7. 28. 진술청취

24) 2006. 10. 23. 진술청취

술하였다.²⁵⁾

김OO는 이준호·배병희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진술서에 관한 한 본인이 관여한 바 없어 진술서 작성 및 입수경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나, 김주연(건평리 해안초소 근무자)과 윤경수(해병대 대대본부 집체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우처럼 참고인 진술서를 수사관이 직접 작성한 사실 등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이라는 것을 시인하면서도, 그러한 진술서가 어떠한 경위로 작성되었는지는 알지 못하며,

이준호를 수사할 당시 불법연행, 장기간 불법구금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이준호나 이한순에 대한 가혹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하며 공소보류 조건제시 등의 기망(欺罔)행위 등도 역시 없었다고 진술하였다.²⁶⁾

라. 소 결

당시 수사관들은 연행과정에서의 구타와 수사중 잠 안재우기 등 가혹행위에 대해 시인하였다. 이준호의 접견기록 중 눈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는 부분은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뒷받침해준다.

그리고 당시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참고인들에게까지 경찰의 허위진술 강요와 협박이 있었음을 볼 때, 이준호, 배병희에게 장기간 불법감금 상태에서 자백을 받기 위해 강요와 기망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준호에게 구타, 잠 안재우기, 강한 불빛을 비추기 등 가혹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경찰에서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경찰에서는 고립된 장소에 장기간 불법감금하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준호에게 검찰에 가서 부인하여도 소용없으니 여기서 말한 대로 이야기하라고 협박하고, 공소취소로 어머니와 함께 석방될 수 있다고 기망하였고,

25) 「조OO 진술조서」 6쪽 (2006.10.23.)

26) 「김OO 진술조서」 12쪽(2006.10.27.)

배병희에게는 아들이 이미 자백을 했고 아들의 말과 같이 진술해야 나갈 수 있다고 강요와 기망을 하여 검찰에 가서까지 허위진술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4. 1972년의 간첩방조 여부

가. 문제의 소재

판결에 의하면, 이준호는 1972. 3. 중순경 6·25 때 월북하였다가 집으로 찾아온 숙부 이한수에게 북한을 찬양하는 교양을 받고 이에 동조하여, 대학생 군사훈련실태, 해안경비상황, 양도면 지서현황 등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재학중이던 서라벌대학의 군사교육단 편제, 건평리 선창가 상황 등에 대해 알려주고,

또한, 주변 군부대, 해안경비상황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북괴 지역으로의 탈출을 도와줄 목적으로 다음날 01:00경 위 이한수 일행을 뒷산 쪽으로 내보내 줌으로써 반국가단체 지령을 받아 그 목적수행을 위해 활동하던 이한수 일행의 간첩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으며(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제1항),²⁷⁾

배병희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이한수와 성명불상 동행인을 만나 4월이 위 대한 김일성 수령의 환갑인데 우리집에서도 무언가 뜻깊고 간단한 것으로 선물을 하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낫주발 1벌과 빈 정종병에 붉은 팔을 가득 채워 이한수에게 제공하고, 이준호와 함께 집 주위를 살펴본 후 이한수 등을 뒷산 쪽으로 나가도록 하여 안전하게 입북하도록 함으로써 반국가단체 지령을 받아

27) 국가보안법 제2조 (군사목적수행)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형법 제92조 내지 제99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규정된 형에 처한다.

형법 98조 (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 목적수행을 위해 활동하는 자들의 간첩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것이다(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제1항).

즉, 이준호, 배병희가 반국가단체 지령을 받아 그 목적수행을 위해 활동하던 이한수 일행의 간첩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증거로는 아무런 물증이 없고, 다만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과 참고인들의 진술 또는 전문(傳聞) 진술이 있을 뿐이다.

나. 이준호의 진술

이준호는 검찰에서 “1972. 3. 중순 22:30경 경기도 강화군 양도면 건평리 소재 집 안방에 6·25 때 월북하였던 이OO와 성명불상자가 찾아와 조부 이봉준, 조모 김애지, 모 배병희, 숙모 이명금과 함께 만난 사실이 있으며, 이때 이OO 일행은 북한을 찬양하는 말을 하였고, 이에 신청인 이준호와 가족들은 이OO 일행이 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그 말에 동조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이OO가 서라벌대학교의 군사훈련 상황을 묻는 질문에 교련훈련 내용과 편제에 대해 설명해 주었으며, 건평리 해안가 경비 상황²⁸⁾과 양도면 지서의 위치와 규모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가족들은 이OO 일행이 선물로 전달한 개성홍삼과 인삼주, 돈 10만 원을 수수하고, 김일성 환갑기념 선물을 요구하는 이OO 일행에게 조모가 다락 위의 낫주발과 괄을 전해준 사실이 있으며, 이들이 집에서 나갈 때 조부 이봉준이 망을 봐주라는 말에 배병희와 같이 01:00경 망을 봐주었다”고 진술하였다.²⁹⁾

그러나 이준호는 1심 공판정(1회 1985. 4. 23.)에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

28) 이준호는 해안경비상황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 동리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진술하였음. 「수사기록」 939쪽

29) 서울지방법검찰청 「피의자신문조서」 934~943쪽 (1985. 2. 27.)

용은 사실이 아니며, 자신은 1972. 3. 중순 22:30경 강화도 건평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월북했던 이OO 외 성명불상자 1명과 만난 사실은 있으나, 북한 생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거나 대학생 군사훈련실태, 해안경비상황, 양도면 지서현황 등에 관해 이OO 일행에게 이야기해 준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고,

“이OO로부터 주위에 여러 사람을 많이 사귀고 친목계를 모아 가까이 지내라는 말과 주변의 군부대나 해안경비상황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 또한 없으며, 이OO 일행이 집박을 나갈 때 이들의 복귀를 돕기 위해 망을 봐준 사실도 없다”고 부인하였다.

“이OO 일행에게 팔을 준 이유는 이OO가 어렸을 때 팔죽 먹는 생각이 난다고 말하여 조모가 꺼내다준 것이며, 이OO 일행이 집에 머문 시간은 40~50분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준호는 항소심 공판정(1985. 12. 18.)에서도 1심 법정과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다. 배병희의 진술

배병희는 검찰에서 “이OO를 만나게 된 경위는 1972. 3. 중순 저녁 동서 이명금이 잠을 깨우면서 이OO가 왔다고 말을 해서 안방에 있던 이OO 외 1명을 보았다”³⁰⁾고 진술하였고,

또한, “당시 이OO 일행은 북한 사회를 찬양하고 이준호에게 대학교 교련훈련내용, 건평리 해안가 경비초소의 위치, 병력 수, 양도지서의 위치, 경찰관 수 등에 대해 질문하자 이에 이준호가 알려주었다”, “이OO는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삼과 인삼주 그리고 돈 10만 원을 주었는데 당시 가족들이 받았는지는 확실치 않으며, 이OO가 집에 왔다간 기념으로 무엇을 좀 달라고 하여 신청인 배병희가 다락방에 있던 낫주발 한 벌과 대병에 든 팔을 찾아 시어머니

30) 서울중앙지검 「배병희 피의자신문조서」 949쪽(1985. 3. 2.)

김애지에게 주자 김애지가 보자기에 써서 이OO에게 주었다”, “이OO 일행이 집을 나갈 때 시아버지 이봉준이 망을 봐주라고 지시하므로 이준호와 함께 망을 봐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³¹⁾

그러나 1심 공판정(1회 1985. 4. 23.)에서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1972. 3. 중순 22:30경 경기도 강화군 양도면 건평리 소재 신청인의 집에서 신청인과 조모, 조부, 아들 이준호, 동서 이명금과 함께 이OO 외 성명불상자 1명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이OO로부터 북한 사회를 찬양하는 말이나 김일성 환갑을 위해 뭔가 뜻깊은 것을 선물하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고,

또한, “이OO에게 팔과 낫주발을 보자기에 써서 준 사실 역시 없으며, 시어머니 김애지가 그러한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시아버지 이봉준이 이OO의 복귀를 돕기 위해 자신에게 망을 봐주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자신 또한 망을 봐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배병희는 항소심 공판정(1985. 12. 18)에서 “1972년 이OO 일행을 접촉할 당시 이OO가 간첩임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시아버지께서 신고하지 못하게 하여 신고치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참고인 진술

이준호의 숙모이자 배병희의 동서인 이명금은 검찰에서³²⁾ “1972. 3. 중순 22:30경, 경기도 강화군 양도면 건평리 소재 집 안방에 6·25 때 월북하였던 이OO와 성명불상자가 찾아와 시아버지 이봉준, 시어머니 김애지, 동서 배병희, 조카 이준호와 함께 만난 사실이 있으며, 그 자리에서 이OO가 북한 사회를 찬양하는 발언을 한 것을 들었다”, “이때 이OO는 조카 이준호와 건평리 해안초

31) 서울중앙지검 「배병희 피의자신문조서 2회」 963~967쪽 (1985. 3. 8.)

32) 서울중앙지검 「피의자신문조서」 973~978쪽 (1985. 3. 13.)

소의 위치와 경비상황과 양도지서의 위치 등에 대해 대화한 사실이 있다”,

또한, “이OO가 김일성 수령한테 바칠 선물을 요구하자 시어머니의 제의로 동서 배병희가 다락에서 낫주발과 팔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주자 보자기에 써서 이OO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고, 이OO 일행이 복귀할 때 배병희와 이준호가 땅을 밟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명금은 1심 공판정(1985. 5. 14)에서 “1972. 3. 초 23:00경 이OO와 성명불상자 1명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이OO로부터 북한 사회를 찬양하는 말을 들은 사실이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 이준호가 이OO 일행에게 건평리 해안 초소의 위치, 경비상황, 양도지서의 위치 등에 관해 대화한 사실 등은 없었으며, 이OO 일행이 방을 나갈 때 땅을 보거나 배웅을 해준 사실 역시 없으며, 오히려 가족들은 이OO에게 자수를 권하였다”고 부인하였고,

“이OO에게 팔과 낫주발을 전해준 것은 시어머니 김애지였으며, 또한 시어머니 김애지가 이명금에게 물을 떠다주라고 하여 밖으로 나가려 하자 이OO와 동행한 사람이 문 앞에서 가족을 나가지 못하게 하여 눈치만 살폈다”고 진술하였다.

위 김애지는 1심 공판정(2회 1985. 2. 18)에서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사실과 좀 틀리다”며, “1972. 3. 일자불상 22:30경 아들 이OO가 경기도 강화군 양도면 건평리 소재 집에 찾아와 남편 이봉준, 며느리 배병희, 이명금, 손자 이준호와 함께 만나 자신이 이OO에게 낫주발에 팔을 담아준 사실”은 있으나,

“당시 이준호는 속옷만 입고 자려고 하다가 이OO 등이 신을 신은 채 뛰어들어와 놀라 이불로 감싸안고 있었고, 배병희 등도 모두 당황하고 있어서 배웅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OO로부터 북한을 찬양하거나 남한을 비방하는 발언에 대해 들은 바가 없으며, 이준호가 이OO에게 대학의 군사훈련 상황과 기타 군사적인 대화

를 나눈 사실 또한 없다”고 부인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이OO에게 낫그릇에 팔을 담아준 이유는 빨리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해서였고, 이OO는 약 30~40분 만에 돌아갔으며, 이때 망을 보아주거나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부인하였다.

강봉규는 서울시경 진술서(1985. 2. 18.)에서 서라벌예술초급대학에서 교련을 담당했는데 교련편제, 장비, 교육대상, 교육내용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제1심 공판정(3회, 1985. 5. 14.)에서 위 내용은 당시 위 대학에서 교련을 받는 학생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며, 1971년 당시 이준호는 중대장직에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마. 참고인 전문(傳聞)진술

이준호의 삼촌이자 간첩 이OO의 친동생인 이한순은 서울시경 진술서(1985. 2. 18.)에서 1983년경 이OO를 만났던 상황에 대해 “1972. 3.경 자정 자고 있던 아내 이명금을 동서 배병회가 깨워서 안방에 들어가 보니 부, 모, 조카 이준호가 앉아 있었는데, 어떤 낯모르는 남자(45세 가량)는 문 옆에 서 있고, 이OO는 앉아 있는 것을 보았으며, 술, 인삼 큰 것 4뿌리, 1,000원짜리 한 뭉치를 내놓으며 ‘이거 김일성 수령님이 특별히 주시는 건데 준호 학비와 아버님 약값에 보태쓰라’고 준 사실 있으며, ‘4월이면 김일성 수령님의 회갑인데 우리집에서도 무엇인가 부피가 작은 것으로 선물 하나를 하얏으면 좋겠다’고 하여 어머님과 상의하여 광술불을 켜 들고 다락에 올라가서 정종병에 들은 붉은 팔과 아버님 회갑 때 들어온 낫주발을 가지고 내려와서 팔을 낫주발에 담아 보자기에 싸서 주었던 사실을 들은 바 있다”고 배병회로부터 들은 내용에 대해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한순은 1심 공판정(2회, 1985. 5. 14.)에서 “1983. 6. 초순 형수 배병회로부터 1972. 3.경 월북했던 형 이OO가 강화도 집에 내려왔었다는 사실을 들은 사실은 있으나, 이OO로부터 돈을 받거나 이OO가 돌아갈 때 배웅을 해주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으며, 이OO에게 팔을 건네주었다는 말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 나서 배병희에게 들었다”고 부인하였다.

이준호의 친누나이자 배병희의 딸인 이주영은 서울시경 진술조서(1985. 2. 18)에서 “1973. 6.경 조부 이봉준의 제사로 강화도의 친정집에 갔을 때 조모 김애지로부터 이OO가 1972. 음력 2월 초순 밤에 처남된다는 사람과 왔다갔는데, 이북에서 아버지 이한국은 학교선생을 하며 잘 살고 있으며, 인삼 4뿌리와 돈을 내놓으며 인삼은 할아버지 잡수라 하고, 돈은 할아버지 약값과 동생 준호 학비에 보태쓰라고 내놓았으며 어머니에게 여기 왔다는 표시로 무엇인가 한 가지 달라고 하여 할아버지 환갑 때 선물로 들어온 낚주발 한 벌에 팔을 담아 보냈다는 말을 들었다”고 김애지에게 전해들은 내용에 대해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주영은 1심 공판정(2회 1985. 5. 14.)에서 “1973. 6. 중순경 친정할아버지 이봉준 사망 후 1년 탈상제사 때 집에 간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할머니 김애지로부터 6·25 당시 의용군에 입대하여 월북한 작은아버지 이OO가 1972. 음력 2월 초순 즈음이 모는 날 처남되는 사람과 같이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으나, 그 사실을 어머니나 동생에게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하였다.

이준호의 처남이자 이주영의 남편인 백남해는 서울시경 진술조서(1985. 2. 18)에서 “1982. 11. 초순 저녁 10시쯤 인천시 주안동 시온아파트 201호 작은방에서 처 이주영이 있는 자리에서 장모 배병희로부터 처삼촌 이OO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는데, 1972. 음력 2월 초순경 자정쯤 이OO 외 1명의 남자가 강화도 집에 나타나 얼마간의 돈뭉치와 홍삼을 내놓았으며, 김일성 회갑기념으로 무엇인가 바쳐야 한다며 붉은 팔을 깨지지 않는 그릇에 담아 달라고 하여 낚주발에 팔을 담아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배병희에게 전해들은 내용에 대해 진술하였다.

그러나 백남해는 1심 공판정(2회, 1985. 5. 14)에서 “1982. 11. 초순 저녁 10시쯤 인천시 주안동 시온아파트 201호 작은방에서 처 이주영이 있는 자리에서 장모 배병희로부터 이OO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는데, 그 내용은 1972. 2. 초순경 이OO가 강화 집에 다녀갔다고 팔을 준 이야기와 인삼을 받은 이야

기를 하였고, 돈은 이OO가 잠바 호주머니에 도로 넣어갔다고 하였으며, 김일성 수령 회갑기념으로 팔을 주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은 없으며, 장모의 그 이야기를 들은 후 처에게 왜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처가 좋은 이야기도 아니라서 안 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부인하였다.

홍OO는 “박모는 이모(조장)와 함께 2인 1조로 남파되어 가족(부모, 형수, 조카 등)을 만났으나, 아버지는 자신을 매우 반가워하지 않았으며, 조카는 이불 속에 있었고, 특히 박모가 목이 말라 물을 떠달라고 형수에게 요청하였으나 함께 동행한 조장이 가족들을 제지하는 바람에 물을 떠오지 못하는 등 방안의 분위기는 매우 경직된 분위기였으며, 이러한 경직된 분위기로 인해 북한으로 복귀한 뒤에도 박모는 조장과 불화가 있음을 들은 바 있다”,

또한, “아버지와 가족 등이 박모의 출현을 반가워하지 않는 행동을 하였다면 공작원 입장에서 다시 공작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라 언급하고, 또한 1차 남파 시 형수가 물을 떠오려고 하였으나 동행한 조장이 이를 제지할 정도로 서로 경계하고 긴장된 분위기였다면 가족이 복귀하는 공작원들을 위해 망을 보도록 허락하거나 지시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³³⁾

바. 소결

이준호는 경찰과 검찰에서 자백한 내용을 1심 공판정에서 번복하고, 자신은 이OO 외 1명이 찾아와 잠깐 동안 만난 사실은 있으나, 북한생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거나 대학생 군사훈련 실태, 해안경비 상황, 양도면 지서 현황 등에 관해 이야기해준 적이 없으며, 이OO 일행이 집 밖으로 나갈 때 이들의 복귀를 돕기 위해 망을 봐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배병희는 경찰과 검찰에서의 자백을 1심 법정에서 번복하고 이OO 외 1명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이OO로부터 북한 사회를 찬양하는 말이나 김일성 환갑을

33) 2006. 9. 27. 진술청취

위해 뭔가 뜻깊은 것을 선물하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으며, 아버지 이봉준이 이OO의 복귀를 돕기 위해 자신에게 망을 봐주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자신 또한 망을 봐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목격자 이명금은 검찰에서 이준호, 배병희의 간첩방조 행위에 대하여 시인하였으나, 1심 공판정에서 이OO 외 1명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이OO로부터 북한 사회를 찬양하는 말을 들었거나 금품을 수수하거나 이준호가 이OO 일행에게 건평리 해안초소의 위치, 경비상황, 양도지서의 위치 등에 관해 말한 사실도 없고, 이OO 일행이 방을 나갈 때 망을 보거나 배웅을 해준 사실 역시 없으며, 오히려 가족들은 이OO에게 자수를 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한순, 백남해는 배병희로부터, 이주영은 김애지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에 대해 경찰에서 진술하였고, 1심 공판정에서 이를 부인하였으며, 그 내용도 결국 전문 진술에 불과하다. 홍OO의 증언 또한 행위주체, 그 내용 등이 특정되지 않은 막연한 전문진술에 불과하며, 강봉규의 증언은 이준호가 서라벌예술초급대학에서 교련 편제 등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 판결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될 수 없다.

목격자 김애지는 1심 공판정에서 이OO에게 늦주발에 팔을 담아준 사실은 있으나 이OO로부터 북한을 찬양하거나 남한을 비방하는 발언에 대해 들은 바가 없으며, 이준호와 이OO가 대학의 군사훈련 상황과 기타 군사적인 대화를 나눈 사실 또한 없고, 자신이 이OO에게 늦그릇에 팔을 담아준 이유는 빨리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해서였고, 이OO는 약 30~40분 만에 돌아갔으며, 이때 망을 봐주거나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는 바,

간첩을 숨겨주거나 숙식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기밀 탐지라는 간첩 활동을 용이하게 한 사실이 있어야만 간첩방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OO가 찾아와서 30~40분간 만나고 바로 보내기 위해 늦그릇에 팔을 담아주어 바로 돌아간 사실만으로 김애지의 간첩방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³⁴⁾

따라서, 1972년 이준호, 배병희의 간첩방조 행위에 대한 증거는 경찰과 검찰에서 한 자백 외에 없다. 그러나 이준호, 배병희는 경찰에서 고립된 장소에 장기간 불법감금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강요에 의해서 자백을 하였고, 나아가 경찰이 이준호에게 검찰에 가서 부인해도 소용없으니 여기서 말한 대로 이야기하라고 강요하고, 공소취소로 어머니와 함께 석방될 수 있다고 기망을 하였고, 배병희에게 아들이 이미 자백을 했고 아들의 말과 같이 진술해야 나갈 수 있다고 강요와 기망을 하여 검찰에서까지 허위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준호, 배병희의 간첩방조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5. 1974년 및 1981년의 간첩행위 여부

가. 문제의 소재

이준호는 ① 1974. 4. 중순경 양도면 사무소 방위병으로 근무중 해병대 대대 훈련장에서 1일간 집체교육을 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위 이OO의 지령을 수행할 목적으로 해병대 대대본부의 위치가 강화군 해송면과 인접한 하점면 부군리 고려산 북쪽 기슭이며, 동 본부 시설은 군막사 7개 가량, 병기창고 1개, 헬리콥터장 1개소 등이고, 훈련내용은 칼빈소총을 가지고 제식훈련, 총검술, 정신교육 등을 실시한다는 등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② 1974. 8. 하순경 다시 납파되어 온 위 이OO 외 1명과 만나 이OO로부터 남조선 인민들도 힘을 합쳐 미제를 이 땅에서 몰아내야 조국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는 등의 교양을 받고 조선노동당 입당권유를 받고 승낙하여 ‘한강518’이라는 당증번호를 부여받아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고, 그간 탐지 수집한 해병대대 시설 등을 보고하고,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 때가 오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

34) 「대법원 1979.10.10. 선고 75도1003 판결」, 「대법원 1967.1.31. 선고 66도1661 판결」 참조

군사시설, 군수공장을 자세히 알아봤다가 다음에 보고하라는 새로운 지령을 받고 공작금으로 한화 5만원을 받고, 1979. 10. 초순경 대우자동차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인천시 소재 대우중공업 훈련원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받는 기회를 이용하여, 대우중공업 인천공장은 인천시 만석동 해안에 위치, 공장규모는 10만평 가량, 동 공장에서 디젤엔진, 지게차, 중장비를 생산, 군납도 하고 있다는 등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이 그 목적수행을 위해 간첩하고(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제1항),

③ 1981. 4. 초순경부터 2일간 인천시 주안동 소재 예비군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동 훈련장의 위치, 시설과 훈련용 무기와 훈련내용 등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이 그 목적수행을 위해 간첩하였다는 것이다(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형법 제98조제1항).³⁵⁾

그러나 위 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이준호가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있을 뿐, 아무런 물증이 없다.

나. 1974년 4월 해병대대의 기밀탐지 여부

1) 이준호의 진술

이준호는 검찰(1985. 2. 27.)에서 “1974. 4. 중순경 강화군 하점면 소재 해병대대 훈련장에서 1일간 집체교육을 받으며, 해병대 대대본부의 위치, 해병대 본부의 시설이 막사, 병기창고, 헬리콥터 등이라는 사실과 훈련내용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35) 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 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폭발물을 사용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98조 (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심(1회 1985. 4. 23.)과 항소심 공판정(1985. 12. 18.)에서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한 바, “1974. 4. 중순경 강화도 하점면 소재 해병대대의 시설 및 교육내용 등을 수집하였다는 것에 대해 당시 1일간 집체교육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내용을 눈여겨볼 수 없었다”며 부인하였다.

2) 참고인 진술

경기도 강화군 양도면 병무담당 직원 윤문석은 서울시경에서의 진술(1985. 2. 18.)과 1심 공판정(3회, 1985. 5. 14.)에서 “1973. 10.~1974. 5. 동안 이준호를 병무담당 보조원으로 데리고 있었던 바, 이준호의 근무내용은 징병검사대상자 관리, 징소집대상자자원 관리 등으로 병무전반 보조업무였으며, 양도면의 예비군 인원은 약 300명~400명 가량이었고, 방위소집자는 약 60여명 가량으로 기억하고, 예비군 중대본부와 예비군 무기고는 양도지서 같은 울타리 안에 있었고, 현 중대본부는 3년 전 면사무소 앞으로 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준호의 초등학교 동문이자 같은 마을에 살았던 친구 김주연은 경찰에서 1973. 5.부터 1974. 6.까지 강화군 양도면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중 1974. 4. 강화군 하점면에 소재한 해병부대에서 집체교육 훈련을 받은 일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1심 공판정(3회, 1985. 5. 14.)에서 1985. 2. 18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수사기록 619-622 정)는 경찰관이 진술을 받아쓰고 자신은 서명·무인만 한 것이라는 것이며, 1973. 5.~1974. 6.까지 양도지서 및 건평 해양초소에서 방위병으로 근무한 바, 당시 건평리 방위소집 근무자로 이준호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1974. 4. 일자미상 고려산 북쪽 기슭에 있는 해병부대에서 방위소집근무자 집체교육 훈련을 받았고, 매월 1회씩 1일 8시간 교육을 받게 되어 그 후 5월에도 교육을 받고 6월에 제대하였으나 이준호와 함께 집체교육을 받았는지는 정확히 기억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 김주연은 또한,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는 수사관이 직접 작성하였고 본인은 단지 마지막에 서명, 날인만 하였다. 수사관이 처음 찾아왔을 때 자신들의 말을 안 듣게 되면 어디로 보낸다느니 하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두렵고 겁이 났던 상황이라 본인이 작성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으며, 오로지 빨리 진술을 끝내고 수사관들을 보내야겠다는 생각만 하였기 때문이었다”, “진술서의 내용 중 해병부대에서 교육받은 사실 등은 당시 자신이 진술하지 않은 내용인데 진술서에 수사관이 임의로 기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³⁶⁾

당시 해병대대에서 집체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윤경수는 1심 공판정(3회, 1985. 5. 14.)에서 1975. 5. 10.~1976. 6. 10.까지 강화군에서 방위소집근무를 한 바,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은 맞으나 경찰관이 받아쓰고 자신은 서명·날인만 했으며, 자신이 해병대대본부에서 받은 집체교육 내용, 대대본부 및 시설교육에 대한 진술은 사실이나, 이준호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남궁겸은 1심 공판정(3회, 1985. 5. 14.)에서 1985. 2. 18. 경찰에서 진술한 양도면 일대 해안초소의 현황 및 해안선 경계근무에 관한 진술(수사기록 601-602정)은 모두 사실이며, 양도면 지역 건평리, 하일리, 능내리 등에 각 1개소의 해안초소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양도면 예비군 등 지역주민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며, 일반주민들은 방위병들이 매 초소에 3~5명이 1개조가 되어 2시간씩 교대근무하는 것을 잘 모르나 예비군과 방위병들은 다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3) 소결

위 윤문석은 이준호가 병무담당 보조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위 김주연은 이준호와 함께 해병부대에서 집체교육 훈련을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윤경수는 이준호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36) 2006. 7. 25. 진술청취

진술하였고, 남궁겸은 해안초소 현황 및 해안선 경계근무에 대한 사실을 진술한 것인 바, 위 네 사람들의 진술은 1972. 3.경 집에서 이OO를 만나서 받은 지령에 따라 1974. 4.경 해병대대 본부의 위치, 시설 등을 국가기밀을 탐지하였다는 점과 관련된 입증자료가 아니다.

따라서 이OO가 해병대대 본부의 국가기밀을 탐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로는 이준호가 경찰과 검찰에서 한 자백이 유일하고, 아무런 보강증거도 없다. 이준호가 이OO로부터 지령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실과 이준호의 자백이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준호가 1974. 4. 국가기밀을 탐지하였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1974년 8월 반국가단체 구성 여부

1) 이준호의 진술

이준호는 검찰에서³⁷⁾ “1974. 8. 하순 23:00경 강화군 양도면 건평리 소재 신청인 집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데, 1972년에 접촉했던 이OO 일행이 재차 찾아와 북한의 우월성에 대한 교양을 하고, 신청인은 이들의 권유로 조선노동당 입당식을 가진 뒤 ‘한강518호’의 당증번호를 부여받고, 김일성에게 충성의 맹세를 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또 “강화군 하점면에 위치한 해병대 본부의 시설, 훈련내용과 양도면 내 예비군병력, 방위병 병력, 예비군중대본부 위치, 예비군 무기고 위치 등을 이OO 일행에게 알려주었다”,

“이OO 일행으로부터 주변의 친구들을 조직할 것과 군사시설, 군수공장 등의 시설을 탐지하라는 지령을 받고, 이들로부터 한화 50,000원을 수수하고 이들이 집을 나갈 때 망을 봐주었다”고 진술하였다.

37) 서울지방검찰청 「피의자신문조서」 953~957쪽 (1985. 2. 27.)

그러나 이준호는 1심 공판정(1985. 4. 23.)에서 “1974. 8. 하순 23:00경 강화군 양도면 건평리 소재 자신의 집 안방에서 이OO 외 1명과 만났다는 사실조차 없으며, 이들로부터 교양을 받거나 노동당 입당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공작금을 수수하거나 주변의 친구들을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은 사실 또한 없다”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부인하였다. 이준호는 항소심 공판정(1985. 12. 18.)에서도 1심 법정과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2) 참고인 진술

이준호의 조모 김애지는 1심 공판정(2회 1985. 2. 18.)에서 “이준호로부터 이OO가 1974. 8. 하순 밤 11시경에 다녀갔다는 말을 들어본 사실이 없으며, 자신은 1972. 음력 5. 8. 남편 이봉준이 사망한 뒤로 병을 얻어 눈도 잘 보이지 않고 몸이 점점 병약해져서 화장실 출입도 겨우 할 정도였으며, 1974. 1. 자신의 손녀 이주영이 혼인을 할 때도 병으로 거동을 못하여 참석치 못하고 집에 있었으며, 1974. 8. 하순경 역시 집 밖에 나간 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소결

위 김애지의 진술은 전혀 입증자료가 되지 않는다. 이준호가 1974. 8.경 이OO를 만나 조선노동당에 가입하여 반국가단체를 구성하여 그 구성원으로서 위 해병대 탐지기밀 보고 및 지령, 공작금을 수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로는 이준호의 경찰과 검찰에서의 자백 외에 아무런 보강증거도 없다. 이준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준호가 이OO를 만나 조선노동당에 가입하여 반국가단체를 구성하여 위 해병대대 탐지기밀 보고 및 지령, 공작금을 수수하였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 1979년 10월 대우중공업 탐지 여부

1) 이준호의 진술

이준호는 검찰에서 “1979. 10. 초순경 인천시 만석동 소재 대우중공업 연수원에서 최창섭 등과 함께 신입사원 연수교육을 받으며 대우중공업 인천공장의 위치, 공장규모, 무장경비원 수 등을 알게 되었고, 구내식당에서 대우중공업 인천공장 사원들과 함께 식사하던 중 성명불상 사원으로부터 이 대우공장에서는 디젤엔진, 지게차, 굴착기 등을 생산하며 군납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³⁸⁾

그러나 이준호는 1심 공판정(1985. 4. 23.)에서 “1979. 10. 초순경 인천시 만석동 소재 대우중공업 연수원에서 최창섭 등과 함께 신입사원 연수교육을 받으며 알게 되었다는 대우중공업 인천공장의 위치, 공장규모, 무장경비원 수, 생산물품 종류에 대해서는 신입사원 교육을 받을 때 대충 들은 바는 있으나, 정확한 회사의 실정은 모른다”고 부인하였다. 이준호는 항소심 공판정(1985. 12. 4.)에서도 1심 공판과 동일한 진술을 하였다.

이준호는 1979. 10. 당시 대우자동차에 갓 입사한 신입사원들은 훈련센터를 벗어나지 못하여 대우중공업의 안쪽은 전혀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었다며, 신입사원 훈련중 개인행동을 하여 안쪽의 대우중공업을 가본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진술하였다.³⁹⁾

2) 참고인 진술

이준호의 대우자동차 입사동료 최창섭은 서울시경 진술서(1985. 2. 18.)에서 1979. 10. 17.부터 10. 22.까지 대우자동차 판매신입사원 교육을 인천시 동구 만석동 소재 대우중공업(주)에서 이준호(당 36세) 등 약 100명 가량이 교육을 받

38) 「수사기록」 958~959쪽

39) 2006. 6. 30. 진술청취

았다는 사실을 진술하였으나,

1심 공판정(3회, 1985. 5. 14.)에서 1985. 2. 18. 경찰서에서 진술서(수사기록 650-651 정)를 작성하고 무인하였으나 그 내용이 일부 틀린다고 진술한 바, 당시 경찰에서 1979. 10. 17.부터 10. 22.까지 대우자동차 판매신입사원 교육을 이준호와 대우중공업(주)에서 교육받은 일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에는 이준호를 몰랐다고 부인하였다.

또한, 최창섭은 당시 진술서 작성경위에 대해 “인천 회사로 찾아온 수사관이 요구하는 내용을 받아 적는 형식으로 작성되었고, 당시 작성된 진술서 내용은 대부분 수사관의 강요에 이루어진 것”으로,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대우중공업이 무엇을 생산하는 공장인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였으며, 대우중공업이 어디에 위치하였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사관들에게 제출한 진술서를 작성할 때 수사관들에게 진술내용 자체를 부인하며 작성할 것을 거부하였으나, 수사관의 강요에 의해 실제로 알지 못하는 허위사실을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⁴⁰⁾

당시 대우중공업(주) 연수원 과장이었던 김영복은 서울시경 진술서(1985. 2. 18)에서 1979. 10. 17.~10. 22.까지 5박 6일간 대우자동차 판매신입교육부에 교육장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1심 공판정(3회, 1985. 5. 14.)에서도 1979. 10. 17~ 10. 22.까지 5박 6일간 대우자동차 판매신입사원 교육을 대우중공업(주) 연수원에서 실시한 바 있으며, 연수원에서는 교육장만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대우중공업(주) 비상계획부 계획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이민화는 서울시경 진술서(1985. 2. 18)에서 1979. 10. 17~10. 22.까지 5일간 대우중공업 사내에서 목격한 사항을 진술한 바, 생산장비, 회사시설, 경비현황 및 구내식당은 대우중공

40) 2006. 7. 27. 진술청취

업 인천공장 사원들과 교육장 연수생들이 같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1심 공판정(3회, 1985. 5. 14.)에서 1985. 2. 18. 경찰에서 진술한 대우중공업의 군납상황 및 경비현황, 구내식당 사용에 대한 진술은 모두 사실이라고 확인하였다.

3) 소결

위 최창섭은 당시 이준호를 몰랐다고 진술하고, 위 김영복은 대우자동차 판매신입교육부에 교육장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이민화는 대우중공업 구내식당은 인천공장 사원들과 교육장 연수생들이 같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이 진술들은 위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되지 않는다.

이준호가 1979. 10. 초순경 대우자동차에 입사하여 대우중공업 인천공장의 위치, 공장규모, 생산장비, 군납 등 국가기밀을 탐지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이준호가 경찰과 검찰에서 한 진술 외에 보강증거가 없다. 이준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준호가 1979년 국가기밀을 탐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마. 1981년 4월 예비군 훈련장 탐지 여부

1) 이준호의 진술

이준호는 검찰에서 1981. 4. 초순경 인천시 남구 주안2동 예비군 중대로부터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 주안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 기본교육을 받으면서 훈련장의 위치와 규모, 훈련시설로는 막사 2동, 강당 1동, 무기고 1동, 사격장, 연병장, 수류탄 투척 훈련장, 철조망 통과 훈련장 등이 있고 훈련용 무기의 종류, 훈련내용 등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1심 공판정(1985. 4. 23.)에서 이준호는 검찰에서 진술한 예비군 훈련장 수집사실에 대해 예비군 교육을 받으러 가서 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참고인 진술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2동 예비군 중대장(1979. 11.~1983. 1. 31.)이었던 유광일은 서울시경 진술서(1985. 2. 18.)에서 1981. 4. 초순경 주안2동 예비군 소집훈련을 시킨 적이 있으며, 당시 예비군 훈련교육 내용, 훈련장 위치, 훈련장 시설 등에 대해 진술하였으나,

1심 공판정(3회, 1985. 5. 14.)에서 위 경찰에서 진술한 예비군 훈련교육 내용, 훈련장 위치, 훈련장 시설 등은 모두 사실이나, 이준호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3) 소결

위 유광일은 이준호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하므로 입증자료가 되지 못한다.

이준호가 1981. 4. 초순경 2일간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훈련장의 위치, 시설 등 국가기밀을 탐지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는 이준호의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밖에 없다. 보강증거도 없다. 이준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준호가 1981년 예비군 훈련장 국가기밀을 탐지하였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VI. 결 론

1. 진실규명

이 사건의 범죄사실인 이준호, 배병희가 1972. 3. 간첩을 방조하였으며, 이준호가 1974. 4. 해병대대 본부의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1974. 8.경 이OO를 만나

조선노동당에 가입하여 반국가단체를 구성하여 그 구성원으로서 위 해병대 탐지기밀 보고 및 지령, 공작금 수수를 하였으며, 1981. 4. 예비군 훈련장의 기밀을 탐지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는 이준호의 경찰과 검찰에서의 자백밖에 아무런 보강증거가 없다.

이준호, 배병희가 경찰에서 고립된 장소에 장기간 불법감금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강요에 의해 자백을 하였고, 나아가 경찰이 이준호에게 검찰에 가서 부인해도 소용없으니 여기서 말한 대로 이야기하라고 강요하고, 공소취소로 어머니와 함께 석방될 수 있다고 기망하였고, 배병희에게 아들이 이미 자백을 했고 아들의 말과 같이 진술해야 나갈 수 있다고 강요와 기망을 하여 검찰에서까지 허위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바, 아무런 증거가 없어 실체가 없는 사건으로서,

절차적으로 이준호, 배병희가 1985. 1. 11.경 서울시경 대공분실에 불법연행되어 2. 19. 구속영장이 발부되기까지 39일 동안 불법감금되어 조사받는 등

무고한 국민이 간첩방조 및 간첩행위로 허위조작되어 처벌받은 비인도적, 반민주적 인권유린 사건이며, 위 불법감금 사실은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2조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애초 이 사건의 발단은 서울시경에서 공작원이었던 홍OO가 북한에서 박모 공작원이 납파되어 경기지역의 가족을 만난 사실을 들었다고 제보한 데서 비롯된 것이며, 공작원 이OO가 잠깐 동안 가족을 만나고 간 사실을 빌미로 간첩방조 및 간첩행위로 허위 조작한 사건으로서,

전향한 공작원의 막연한 제보만을 근거로 서울시경 대공분실에서 수사 초기부터 수사관 관여하에 참고인들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을 작성하도록 강요하였으며, 수사기록에 구금일자 등을 허위로 기재하고,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의 구타, 잠 안재우기 등의 가혹행위를 자행하여 자백을 강요하고, 자백하면

석방될 수 있다 등으로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백 외에 증거가 없는 사건에 대해 검찰은 경찰의 수사결과를 그대로 받아 들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소송의 원칙을 방기하고 기소하였고, 법원은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로 조작된 것이라는 호소를 무시하고 유죄판결을 하였고,

그 불법수사와 위법한 재판으로 인해 수년간 징역을 살고 나서도 간첩으로 낙인찍혀 고통을 당한 전형적인 간첩조작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상과 같이 진실규명이 되었음을 결정한다.

2. 권고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자백에 의존한 무리한 기소 및 증거재판주의 위반 등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는 위법한 판결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별표 1> (생략)

<별표 2> (생략)